

대전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1나1195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6. 24.

판 결 선 고 2022. 10. 28.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8. 12. 선고 2020가소1178 판결

##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81,867원과 이에 대한 2020. 3. 7.부터 2022.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2021. 10. 5.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소를 교환적 변경하였다).

## 이 유

###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20. 3. 3.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2020. 3. 6. 11:39경 피고 명의 C조합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라 한다).

나. 피고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돈을 입금하여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2020. 3. 6. 원고로부터 위 4,000,000원을 입금받은 뒤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사기방조의 혐의에 대하여 2020. 7. 14.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허위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본건에 이르게 된 점, 본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19558호).

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피해구제절차에 따라 2020. 5. 22. 피고 명의 C조합계좌에서 원고에게 18,133원이 피해환급금으로 지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회생활상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의 행위가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성명불상자와 대출관련 사항(금액, 이율, 변제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담한 자료가 없고 대출 가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송금 행위가 이루어졌다.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쌓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단순한 인터넷 또는 온라인 입출금 거래방식을 넘어,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원고 명의로 입금된 4,000,000원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사용하여 600,000원씩 5회, 500,000원씩 2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여러 계좌에 분산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현금자동입출금기의 1회 출금한도는 제한되어 있어 4,000,000원을 한꺼번에 인출할 수 없고, 현금자동입출금기로 같은 사람에게 무통장입금할 수 있는 한도는 1일 1,000,000원이다(갑 제4호증). 성명불상자는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무통장입금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명의자에게 분할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자로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가) 책임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해를 입은 2020년 3월경은 이미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유형의 전자금융사기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던 점, 원고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말만 믿고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경솔하게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주된 원인이 된 점, 피고가 범행을 계획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의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피고가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

### 나) 손익공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고 채권자가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하고, 이는 과실상계뿐만 아니라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피고의 계좌에 4,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그 즉시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현실적, 확정적으로 입은 것이고, 그 이후 지급받은 피해환급금 18,133원은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공제되어야 할 이득이라고 보아야 한다.

### 다) 계산

$4,000,000\text{원(손해액)} \times 15\%(\text{책임제한}) - 18,133\text{원(피해환급금 공제)} = 581,867\text{원}$

##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581,867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3.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효선, 판사 박상준, 판사 신지은